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목 차

제1장 총칙1
제1조 목적1
제2조 용어의 정의1
제3조 적용범위2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2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2
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2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2
제7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2
제8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3
제9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3
제10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3
제11조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3
제12조 임직원의 의무4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4
제13조 선언목적4
제14조 선언방법4
제15조 자율준수편람4
제16조 모니터링 책임과 권한4
제17조 모니터링의 구성5
제18조 모니터링 절차5
제19조 모니터링 방법5
제20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6
제21조 내부제보시스템6
제22조 제재의 원칙6
제23조 제재의 책임과 권한6
제24조 집중교육 실시6
제25조 교육의 실시6
제26조 교육의 내용7
제27조 운영상황 공시7
제28조 운영성과 평가7
브 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2022.01.14 제정 (규정 제13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 2. "자율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경쟁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6.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7.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사무국에 소속되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8. "임직원"은 공단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공단으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9. "사전협의"라 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 10.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공 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11.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공단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주순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의 본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 담당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 3. 경쟁법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 4. 공정거래 관련 사전협의의 실시
- 5.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6.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 7.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 8. 자율준수 관련 활동 및 사안의 연 1회 이상 이사장 보고
- 9. 기타 운영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하며, 의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상생협력, 감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며, 필요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협의회 간사는 준법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8조(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 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 2.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편람이나 연간 계획, 사안의 심의
- 3.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의 제정 및 정기적인 재검토
- 4. 자율준수 정책 조율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설치하며, 준법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한다.

제10조(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① 자율준수사무국의 장은 준법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②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 3.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4. 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임직원 교육

제11조(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자율준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공단 업무와 관련한 경쟁법, 기타 공정거래 관련 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내규의 정비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과 계약이행단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사업부서의 업무수행 관련 경쟁법 위반행위 여부 점검
- 3. 경쟁법 및 자율준수제도 관련 임직원 교육

- 4. 공정거래 준수 위반사항 발견 또는 접수 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 시행
-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정기보고
- 6. 경쟁법 및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정보의 사내 전파
- 제12조(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사무국의 자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사무국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제13조(선언 목적) 이사장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 제14조(선언방법) ① 이사장의 자율준수의지는 연 1회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공단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 ② 자율준수의지 선언문은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 제15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이행절차 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계약관련, 발주관련 등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공단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모니터링 책임과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모니터링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링 팀 구성
- 2.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 3.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결과 보고
- 4.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위반업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청
- ② 자율준수사무국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 2. 모니터링 팀 구성하여 모니터링 실시
- 3.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 4.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사항의 시행여부 확인
- ③ 수검부서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링 활동 협조
- 2.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 3.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사무국 보고

제17조(모니터링의 구성) 모니터링 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 1. 점검: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한다.
- 2. 확인: 업무사항을 확인하여 경쟁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 3. 보고: 임직원의 경쟁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이사장에게 전달한다.

제18조(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자율준수사무국은 매년 초 연간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2. 모니터링팀 구성: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사무국의 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 실시 또는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3. 모니터링 실시
 - 가. 모니터링은 계획서와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실시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행의 확인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나. 모니터링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각각의 위법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는다.
- 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법 위반 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19조(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확인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및 확인
- 제20조(모니터링 결과 보고) 자율준수사무국은 모니터링 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내부제보시스템) ① 자율준수사무국은 공단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 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담당자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전화, 우편,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식의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
- ② 자율준수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보자에게 제보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 제보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내부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알려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제22조(제재의 원칙) ①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경쟁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3조(제제의 책임과 권한)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시 각 수검대상자의 법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2.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사무국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재조치 현황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집중교육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교육의 실시)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공단의 계약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사무국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제27조(운영상황 공시) 자율준수사무국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성과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 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칙<규정 제1366호, 2022.01.1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